

의안번호	제857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용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용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의자 : 박용규, 이태훈, 노금식,
김호경, 변종오, 임영은,
황영호

1. 제안이유

의용소방대원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,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요양, 장애, 장제, 유족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“인감 증명서” 항목 삭제(별지 제13호)

나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전담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1일 8시간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(안 제19조제3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
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
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“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”를 “(가족관계
증명서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소집수당 등) ①·② (생략) ③ <u>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(생략)	제19조(소집수당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전담의용소방대원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
2.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
3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

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9조(소집수당 등) ① <생 략>

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수당 지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, 행사장 안전 지원활동,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, 화재 예방·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19조(소집수당 등)
 -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기간은 2025년 ~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 : 14,145,929천원

- 2025년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: 13,313원
- 인원 : 4,208명 [의용소방대 정원(5,260명)의 80%]
- 활동 예상시간 : 월 4시간
- 2021년 ~ 2025년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평균 증가액 : 347원 (추계 반영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불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		-	-	-	-	-	-
세 출		2,689,013	2,759,101	2,829,170	2,899,278	2,969,367	14,145,929
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		2,689,013	2,759,101	2,829,170	2,899,278	2,969,367	14,145,929
재원 조달		2,689,013	2,759,101	2,829,170	2,899,278	2,969,367	14,145,929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2,689,013	2,759,101	2,829,170	2,899,278	2,969,367	14,145,929
	지방세	2,689,013	2,759,101	2,829,170	2,899,278	2,969,367	14,145,929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구.군비	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